

#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(이달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 
발 의 자

2021. 5. 24.

성원환 · 김명국 · 김선욱 ·  
배효임 · 배철현의원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가교역활을 수행하는 이장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·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임무수행 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증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 확대(안 제5조)  
- 건강 검진비 지원 추가(임기 중)

## 3. 개정조례안 : 붙임과 같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##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명 “교육훈련 등의 지원”을 “임무수행 등 지원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,제2항,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국내·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 훈련
- ②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, 체육행사, 환경·하천감시 및 산불예방에 필요한 피복비,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등
- ③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5조(교육훈련 등의 지원)</b>                     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, 교육 훈련, 국내외선진지 견학, 체육행사, 환경·하천감시 및 산불예방에 필요한 피복비지원 그 밖에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<b>제5조(임무수행 등 지원)</b>                     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선진사례 도입과 식견을 넓히기 위한 국내·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 훈련</li> <li>②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, 체육행사, 환경·하천감시 및 산불예방에 필요한 피복비,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 등</li> <li>③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li> </ol>